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\*\*\*\*\*
2. 부과취소사유 :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결정으로 인한 환급  
(\*\*\*\*\*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)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340,614,890	280,794,820	59,820,07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결의결정서 1부.  
 2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  
 3. 조세심판결정통지서 및 관련자료 1부.  
 4. 환급청구서 및 환급통지서 1부. 끝.

---

주무관 **이기명** 지방소득세4팀 **최종권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06/04  
장 **문경수**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18905 ( ) 접수 ( )  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[www.gangnam.go.kr](http://www.gangnam.go.kr)  
전화 02-3423-5746 /전송 02-3423-8834 / [dlr1audd1a@gangnam.go.kr](mailto:dlr1audd1a@gangnam.go.kr) / 부분공개(6)